

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심사보고서

### 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07. 11. ----- 옥영복의원외 6인
- 나. 회부일자 : 2007. 11. 16
- 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 제152회 임시회(폐회중)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('07.11.20)  
상정 의결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(의회운영위원회 임일심 의원)

#### 가. 제안이유

지방자치법 일부개정(2007.5.17)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(2007.10.4)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과 2007년도 「사하구 의정비심의위원회」에서 결정된 2008년도 의원 월정수당 조정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#### 나. 주요골자

-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인용 조문 변경 (안 제1조)
- 월정수당 금액 조정 (안 제3조)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본 개정 조례 안은 지난 2007.5.17과 10.4 각각 개정된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전부 및 일부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의 당연 변경과 2007년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·결정 통보된 2008년도 의원 의정비의 조정을 위한 내용으로
- 지방자치법 제33조제2항(…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)에 의거 지난 2007년 10.31 「사하구 의정비심의위원회」에서 최종 심의·결정하여 우리 구의회에 통보 되어온 의정비 지급기준액을 바탕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 정비하는 것임.

- 「사하구의정비심의위원회」에서 최종 결정, 통보 온 연간 의정비는 의정활동비 1,320만원(월110만원), 월정수당 2,160만원(월180만원) 등 총 3,480만원으로서, 올해(총3,108만원) 대비 11.9%가 증가되었고,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국적으로 올해 지급범위와 동일하고, 월정수당은 올해 1,788만원(월149만원)보다 연간 372만원이 증가
- 참고로 이는 올해 부산시 16개 기초자치단체에서 각각 최종 결정된 금액과 비교해볼 때 총 금액으로는 중간정도(진구 3,960만원, 서구,북구 3,000만원)에 속하지만 전체 순위를 보면 하위권으로서, 우리구 인구와 지역 등 구세를 보면 타 구와 비교할 때 조금은 아쉬운 점이 있다고 생각됨.
- 특히 당초 심의된 잠정금액에서 어떠한 이유로던 후퇴된 점이 더욱 아쉽다고 생각되나, 우리구 재정사항을 감안하여, 올해대비 약 12% 증가와 「사하구의정비심의위원회」의 마지막 까지 심사숙고하며 고심 끝에 어렵게 내린 결정이라 생각하고, 의견을 적극 존중해야 될 것으로 사료됨.

####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#### 5. 토론요지 : 생 략

#### 6. 심사 결과 : 원안가결